

한국수출입은행

사업타당성조사 (F/S)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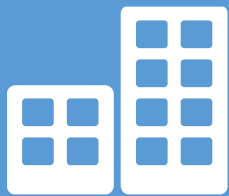
CONTENTS

1



대상사업 선정

2



용역수행사 선정

3



용업사업 관리

4



평가의견 조사



대상사업 선정

1. 대상사업 수출입은행 고객기업 또는 고객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형사업

고객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수출입은행 여신승인액 및 여신작액 보유 국내기업

*자회사등을 통해 당행과 간접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당행PF 사업에 SPV 출자 등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해당

**대표사가 고객기업이 아니더라도 컨소시엄내 고객기업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주요특징

✓ **성공불 조건** 성공불 조건으로 신청기업이 사업수주에 최종 성공하는 경우 지원 받은 용역비 전액을 수출입은행 앞 환입

* 사업수주성공일: 지원이 이뤄진 사업과 관련한 대주단과 사업주간 금융계약서 서명일

✓ **산업별, 공종별 제한 없음**



대상사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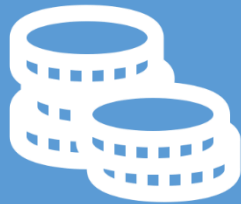
2. 지원항목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용

1



다른 기관 F/S(Pre-F/S)
기수혜사업도
지원받는 과업범위를
달리하는 경우 신청 가능

2



사업별 지원금액 한도가
별도로 없으나
총사업비 및 당행 연간지원규모
대비 신청금액을 고려

3



신청기업이 비용의 일부를
공동부담하는 경우도 가능



대상사업 선정

선정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동일 사업을 복수의 기업이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모두 배제

기선정 사업에 대하여 다른기업이
차기 공모회차에 응모하는 경우
(과당경쟁 방지 및 형평성 고려)



대상사업 선정

3. 신청서류 접수

공모주기 및 방법

홈페이지 공고 (www.koreaexim.go.kr)

신청서류

이메일로 접수, **서류접수시** 신청기업 앞 **접수번호 발급**

컨소시엄

✓ 대표사가 신청서를 작성하며, 컨소시엄 개요 및 소개자료 등 제출

* 컨소시엄 확인서류(계약서, MoU, 참여의향서 등) 제출 필요

✓ 외국기업 제출서류는 사업선정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대상사업 선정

4. 서류 사전검토

심사부적격 판단시 평가대상사업에서 제외

심사부적격 사유

심사를 위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신청기업이 수출입은행 **여신규정상 여신부적격자(연체 등) 및
여신억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KIND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과업에 대한 중복수혜**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대상사업 선정

5. 선정방법 공모방식, 사업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선정방법

종합평점 및 연간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예산규모, 사업운영방향, 산업별 포트폴리오, 특정 신청기업 및 특정 산업군 편중 등

사업선정위원회 구성

내·외부 전문가(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사업별 평가시간 30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평가기준

평가배점표 활용(다음 슬라이드 상세설명)

- ✓ 평가항목: 사업경험, 사업타당성, 수주가능성, 금융지원가능성, 국내기업지분율, 재무상태, 거래관계 등
- ✓ 컨소시엄은 개별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컨소시엄을 평가



대상사업 선정

5. 선정방법 (평가기준표 상세설명)

평가항목		배점	상세설명
사업타당성		20	사업 필요성, 시공/운영/판매/원재료 조달계획 적정성 등
사업타당성조사지원의 적정성		10	지원취지와 부합성, 용역비용 적정성 등
사업주역량		20	재무상태, 사업수행경험, 사업구구성의 적정성 등
사업국 및 발주처		15	국가신용등급, 발주처의 적정성 등
자금조달가능성		25	사업주 신용도, 총자산규모 대비 사업규모 적정성 등
리스크 경감방안		10	완공지연 및 비용초과 리스크 등
가점	국내기업간 컨소시엄	3	지분참여를 기준으로 평가/불인정: 자/손회사간 및 계열사간 컨소시엄
	당행 핵심전략국 대상사업	3	10개국(방글라데시, 필리핀, 미얀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미국, 콜롬비아)
	발주처/금융기관 지원의향 표명사업	3	사업주 발주처 간 직접 체결한 MOU, 발주처 > 사업주 앞 서신

*총 109점 <사업공모 공지시, 평가기준표(세부항목 포함) 공지 예정>



용역수행사 선정

1. 선정방법

공모방법

나라장터에 공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Korea ON-Line E-Procurement System

신청방법

용역수행사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용역수행사를 선정함

(용역수행사선정위원회 구성)내·외부 전문가

(외부전문가는 Pool 구성)



용역수행사 선정

용역수행사 선정관련 주요 특징



사업별로 **부득이한 경우 신청기업의 용역수행사 직접선정 허용**

*신청기업이 용역비용의 과반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용역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후 제한적으로 허용



신청기업(컨소시엄 참가사 포함)은 용역수행사 선정 입찰에 **참여 불가**



용역수행사 선정

2. 입찰공고

컨소시엄

공동이행
방식

컨소시엄의 경우, 신청서는 대표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며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입찰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함

- ✓ 공동도급으로 용역실적 상호보완 가능, 공동도급시 공동이행방식 적용
-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필요 및 지분율에 따라 회사실적 평가



용역수행사 선정

3. 입찰관련 사전 협의 및 설명회

입찰공고 전

용역관리담당부서장은 **사업별**
사업주와 상세 과업범위,
용역수행사 자격요건 등 사전협의 실시

입찰공고 후

필요시, 용역관리담당부서장이
용역수행사 후보기업들 대상 사업별
용역수행 방향 등에 대한 **입찰설명회 실시**

※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메일 또는 유선 질의로 대체 가능



용역수행사 선정

4. 용역수행사 평가방법

선정 방법

평가배점표에 따라 **기술평가점수 (가중치 90%)** 및 **가격평가점수 (가중치 10%)**를 반영한 **종합평점**으로 평가하되, **기술배점의 85% 이상 득점 대상**을 협상대상자로 함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회** 앞 제안 설명을 실시하며,
필요시 해당 사업의 사업주가 **과업범위 및 자격요건** 등을 사전 설명



용역수행사 선정

계약체결 조건

컨소시엄인 경우,
상호 연대책임 조건을 계약서상 명시

신청기업의 용역비용 분담 방식은
현금부담에 한함

용역보고서 작성언어 (국문 또는 영문)

단, 사업별 필요시 국문 및 영문보고서 병행

수출입은행은 사업주와
용역보고서 작성 언어를 사전협의



용역사업 관리

1. 사업운영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수은 내부 구성원 및 사업주 *

* 단독 사업주로 참여 시 대표이사가 추천하는
임직원 1명,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최대 3인 이내

주요 관리사항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및 용역보고서 승인



용역수행사 선정

2. 기타



비용지급

용역수행에 따른 비용 지급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수출입은행과 신청기업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함(현금분담)



결과보고서

사업진행경과보고서 연 1회 제출

* 단, 사업수주성공시 또는 사업추진 중단 등의 경우 보고서 제출 중단



평가의견 조사

평가의견 조사

지원 완료 후

신청기업 및 용역수행사를 대상으로
지원 결과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건의사항 등 조사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